

例規則의 公布日도 市報에 掲載한 날로 하고 자 하는 것은 關係法令 改正에 따른 條例整備次元에서 妥當하다고 인정하여 同 改正條例案을 出席委員 滿場一致로 原案可決하였습니

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市長의 地方職轉換에 따른 定員調整과 政務副市長室 秘書人力 3名 및 市政 弘報, 報道業務 遂行人力 5名을 補強하고, 業務量 縮小에 따라 靑少年 職業專門學校 教育訓練教師 1名을 減縮하며, 市議會 1名을 增員한 議會事務處 定員 總數를 同 條例案에 插入하고, 附則으로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 定員關聯 規則은 削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2次에 걸쳐 면밀히 審査한 결과 同 改正條例案을 일부 修正하였습니다.

즉, 地方自治法 第82條와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議會에 執行機關과 分離하여 條例로 議會事務處를 設置하고 定員을 별도로 管理하도록 한 것은 議會의 獨立性を 保障하고 地方議會 機能의 원활한 遂行을 保障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하여 議會事務處와 關聯된 規定은 削除하여 議會事務處 定員은 現행 議會事務處設置條例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內容을 主要骨子로 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을 出席委員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오늘 本會議에 上程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條例와規則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 청 : 1,988명
- 2. 직속기관 : 5,103명
- 3. 사업소 : 9,640명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 청 : 1,988명
- 2. 직속기관 : 5,103명
- 3. 사업소 : 9,640명